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128
2025.4.28.

■ 판례 동향

할당관세 추천의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해설

■ 품목분류 동향

마일드 하이브리드 (Mild Hybrid) 자동차의 품목분류

■ 개정법령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판 깔린 韓·美 관세 협의…
먼저 시작한 日·베트남 협상은?



9 772799 725004
ISSN 2799-72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발 행 인 이종우
편 집 인 최흥식

총 괄 김민정 mjk2413@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 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 케 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인 쇄 경성문화사

배 포 (주)아림디엠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5년 4월 28일(통권 제2128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알립니다>
통권 제2129호는 5월 12일 발간됩니다.
▲5월 5일 : 휴간, ▲5월 12일 : 제2129호, ▲5월 19일 : 제2130호

이주의 초점

04 판 깔린 韓·美 관세 협의 … 먼저 시작한 日·베트남 협상은?

06 Weekly News

12 전문가 칼럼

강지숙 KOTRA 브뤼셀무역관 차장

20 현장 특파원

관세행정실무해설

24 **관세행정안내**
비당사국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32 **질의응답사례**
강황추출분말의 HS Code

판례동향

35 **관세판례해설**
할당관세 추천의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해설

품목분류동향

43 **품목분류해설**
마일드 하이브리드(Mild Hybrid) 자동차의 품목분류

50 **품목분류 M.A.P**
성형목탄 분류 사례

53 **세번 바로잡기**
섬유 플록

56 **상식 밖의 상품학**
'누에고치서 비단으로' 양잠은 곧 인류 역사

최신개정법령

58 **부령**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61 **고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63 **입법예고**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판 깔린 韓·美 관세 협의 ··· 먼저 시작한 日·베트남 협상은?

日, 미국 속내 먼저 파악하는 등 치밀한 접근, 반면 베트남은 신속 협상 추진

韓·美 간 관세협상을 위한 판이 4월 24일(美 현지시각) 드디어 깔렸다. 양국 간 이번 협상은 전초전 성격이 강하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입장이다.

미국의 요청으로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이번 '2+2 관세 협의'에서 우리측 대표로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측 대표로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만나 양측의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90일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인 7월 8일 이전까지 합의를 끌어낸다는 계산이지만 관세 부과가 시행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4월 수출에 벌써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실제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對 미국 수출이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3% 감소했다.

우리 정부의 對美 협상카드, 日·베트남 협상 분석이 먼저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 앞서 협상카드로 에너지, 조선업 부문을 언급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아직까지 미국은 확실한 협상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모든 카드를 공개하는 것은 자칫 협상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시작한 일본과 베트남이 어떤 카드로 협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추후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월 24일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과 일본의 대응'과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베트남의 대응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통해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 고려할 만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日 정부, 시간 걸려도 치밀한 협상 예고··· 자동차 관세 철폐 위해선 사활걸 것

일본정부는 지난 4월 16일 美·日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본격화했다. 협상에 앞서 일본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밀한 협상을 예고하고 자동차 비관세장벽 완화, 농산물 비관세장벽 완화 및 수입 확대, LNG 수입 확대 및 개발사업 참여, 엔저 시정의 협상카드를 준비했다. 특히 對美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해당 산업 생태계가 약화되는 것을 우려, 자동차 관세 철폐를 위해 사활을 건 협상을 예상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1차 협상에서 양국은 쌀, 자동차 등 비관세장벽 철폐, 미국의 對日 무역적자 구조 시정이

주요 의제가 됐다. 무엇보다 일본은 미국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에 안보 의제를 끌어 들였고, 되도록 신속한 협상 타결을 원하는 등 상당한 의견 차이만 있음을 확인했다고 알려졌다.

우리의 대응, 미국의 최우선 요구사항 파악이 중요

보고서는 일본의 對美 협상 진행을 통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韓·美 협상에 우리는 먼저 미국이 관세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한 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은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의제를 정리하고, 對美 협상력을 높이는 다양한 협상 카드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주문하고, 경쟁우위에 있는 역량을 활용해 미국의 제조업 강화, 국가안보에 공헌하는 방안을 발굴함으로써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産 LNG 수입 확대와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 참여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 요구하는 의제로, 일본의 對美 협상 동향을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와 안보를 연계한 협상전략에 대해 우리나라는 경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일본 제조업 전반의 생산 둔화는 우리의 對日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파급효과를 사전에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베트남, 통화정책·환율부문 정책도 부분적 조정

베트남은 일찍부터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직후 정상 간 통화, 총리의 성명발표, 정부 특사단 파견 및 협상 논의 등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적극적으로, 또 빠른 시기에 타결할 것을 목표로 삼고 미국이 표면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미국 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율 인하와 비관세장벽 철폐, 미국의 對베트남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미국産 제품 구매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더 나아가 미국이 관심을 표명한 통화정책과 환율부문 정책도 부분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또 미국의 관심이 관세율 인하보다는 중국産 제품의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 방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베트남정부는 향후 원산지규정(RoO, Rules of Origin) 통제, 무역사기 근절, 불법환적 감시 등을 특별히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베트남은 중국,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중간 투입물로 최종재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교역구조를 지니고 있어 美·中 통상 분쟁 상황에 특히 취약하므로, 美·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베트남 내에서 교역대상국 다변화 및 경제구조 개혁 등을 포함 대외전략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하구현 기자 |

보세공장 원재료 공급 업체, 관세 환급 쉬워진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가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신청 증빙서류가 기존 2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돼 업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25일부터 시행했다.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는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필수 서류로 국내업체가 보세공장 등에서 생산하는 수출물품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이를 수출로 인정해 발급하는 서류다.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기존에는 수출신고서 또는 수출계약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2종을 보세공장으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급업체들이 서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앞으로는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시 기존 수출신고서,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2종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3종이 추가돼 이 중 1가지 서류만 선택해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개선됐다.**

이번에 추가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장이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한 수출기업에 발급하는 서류로서, 세관장이 수출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제출 서류 ●

현 행	개 선	
▌ 수출용 사용 확인서류 **모두**	▌ 수출용 사용 확인서류 **5종 중 1종 선택**	
- 수출신고서(또는 수출계약서) - 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 수출신고서(또는 수출계약서) - 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추가 3종)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수출신용장

※ 출처 : 관세청

이번 고시 개정은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불확실한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美 관세 조치에 품목분류부터 신속 지원

관세평가분류원,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 본격 시행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對美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평가분류원이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4월 23일부터 시행했다. 지난 4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對美 수출기업의 품목분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로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대표전화 : 042-714-7538)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미국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사 물품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韓·美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는 對美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평가분류원 최근 이 제도를 활용한 對美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기오븐을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A사(광주 소재)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소식을 접한 뒤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례를 소개했다.

전기오븐의 주원료가 철강이었기 때문에 A사는 자사의 전기오븐이 철강 파생제품으로 25% 관세 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해당 건은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고 A사는 전기오븐의 품목번호와 함께 25%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빠르게 회신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5월 19일(서울)과 20일(부산) 양일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이 발표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관련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품목분류체계,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품목분류 결정 및 품목분류 국제분쟁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설명회와 동시에 맞춤형 일대일 상담창구를 운영해 심층 상담이 필요한 업체에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한다면, 업체명 및 연락처를 기재해 이메일(jes118@korea.kr)로 5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미국정부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韓·美 품목번호 연계표'를 4월 18일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연계표는 본지 통권 제2127호(57p)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무역위, 베트남産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향후 5년간 11.37~18.81% 덤핑방지관세 부과

베트남産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최대 18.81% 덤핑방지관세가, 중국産 차아황산소다와 태국産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각각 최대 33.97%, 17.19%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무역위원회는 4월 24일 제459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베트남産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과 중국産 차아황산소다와 태국産 파티클보드 제품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번 무역위의 판정에 따라 베트남産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는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産 차아황산소다와 태국産 파티클보드는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아황산소다 제품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차아황산소다는 염색조제 및 합성섬유의 세정제, 펄프 표백제, 의약품 외 유기 및 무기 화학제품의 표백 및 탈색제로 사용되며, 파티클보드는 가구용품(책상, 싱크대, 일반 가구 등), 건축자재(건물 천정판, 내장판 등), 포장용품(각종 포장박스) 및 기타 목재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이날 무역위는 중국産 PET 필름 중간재심사에 대한 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이번 조사는 해당 제품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덤핑방지관세 최대 36.98%를 부과했으나 최근 수입물량 증가, 수입단가 인하 등 상황 변화로 인해 덤핑조사 대상 기간이었던 2021년 대비 작년 기간 중 덤핑률이 높아진 것으로 의심한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기업 4개社가 중국 천진완화·캉훼이를 상대로 덤핑률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무역위는 앞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인 2028년까지 수정된 덤핑률 적용을 기재부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년 9월에 조사 개시한 중국産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도 개최했다. 해당 조사 건은 현재 21.6%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며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 하구현 기자 |

관세청·철강협회, 철강재 불법수입·유통차단 논의

관세청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회피하고자 저가 철강제품이 불법 수입될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국철강협회 및 회원사와 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일제 점검,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 ▲유통이력관리제도 등 주요 단속 현황을 설명했다. 관세청은 현재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해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 거짓 표시하는 등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계도·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은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

철강업계 측은 저가 철강재의 불법 유입이 가속화되는 만큼 수입 철강 관련 원산지·덤핑방지관세 위반행위 단속과 국내 유통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음매가 없고 두께 제한이 없어 발전소, 석유화학 시설 등 고온·고압·내식성이 요구되는 시설의 특수 배관 자재로 사용되는 무계목강관(Seamless Steel Tube, HS 제7403호)을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은 유통단계별 거래 신고 의무가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産 무계목강관 수입량은 지난 2021년 14만 4,022톤에서 2023년 15만 7,014톤으로 늘어났다. 업계는 외관상 수입품과 국산품을 구분할 수 없고 유통경로만으로 원산지를 구분하기 힘들어 유통이력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단속 효과를 높이려면 시장 동향 및 위험 정보 제공 등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불법 의심 거래 정보를 관세청에 제보할 것을 요청했다.

검역본부, 불법 수입 농·축·수산물 단속 '광역수사팀' 신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을 거치지 않은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행위와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는 전담 수사조직(광역수사팀)을 4월 18일 신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작년 공항·항만 등 국경 지역에서 우편·탁송·휴대로 농·축·수산물을 불법 수입하다 적발돼 폐기된 건수는 21만 3,000건에 달한다. 2021년 7만 9,000건에서 2022년 13만 3,000건, 2023년 19만 8,000건, 2024년 21만 3,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 수입된 농·축산물이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범죄 관련 은어·약어를 사용하는 등 행태가 더욱 은밀해져 적발과 혐의 입증을 위해 디지털 데이터 및 통화, 이메일 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광역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했다. 중부지역본부에 개설된 광역수사팀은 우선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권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하며, 향후 수사 범위를 남부 권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 장비, 분석실, 참관실을 갖춘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해 그간 관련기관에 의뢰하던 디지털포렌식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 김성은 기자 |

韓, '2+2 통상 협의'서 에너지 안보·美 조선업 재건 내놓고 상호 및 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 요청

한국정부는 4월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를 진행했다.

2+2 통상 협의는 양국 재무·통상 장관이 참석해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한 양국의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 간 회의다.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상 자리에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 모색과 한국의 현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함을 美측에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韓·美 간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 및 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이번 협의는 첫 번째 공식협의로 양국은 앞으로 실무회의와 추가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농식품 수출 애로, 언제든 물어보세요!

최근 미국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애로를 겪는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수출입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전문성도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출기업 애로 대응체계를 개편했다.

먼저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의 수출정보데스크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그동안 전화 중심으로 진행했던 상담을 aT 홈페이지(www.at.or.kr) 내 '1:1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신설해 24시간 상담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답글과 함께 원하는 경우에는 유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주묻는질문(FAQ)의 형태로 게시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상담 게시판에 질의를 남기면 관세, 통관, 무역규정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직접 상세한 답변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전문가 답변 외에도 관세청(수출입기업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애로신고센터), KOTRA(관세대응 119) 등 관계 부처·기관(상담 창구)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폭넓은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매주 aT의 수출정보데스크 상담 실적을 점검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범부처를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 하구현 기자 |

관세전쟁에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앞당긴다

관세청은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열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의 통관 환경 변화 등 6개국의 통관제도와 무역 규제 흐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세관과 기업 간 일대일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해 수출 애로사항과 통관분쟁 예방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 설명회 및 일대일 상담 신청은 5월 2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가능하다.

식약처, 5개국 인증 한번에 가능한 MDSAP 가이드라인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기능전자혈압계의 MDSAP 심사모델 가이드라인을 4월 24일 제정·발간했다.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은 의료기기 제조·품질 기준을 공동 심사하는 협의체가 1회 심사로 국가별 품질경영시스템 심사를 상호 인정하는 프로그램이다. MDSAP 인증을 획득하면 최대 5개 시장(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의 제조·품질 인증 심사를 전면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팔에 착용하는 커프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압박해 혈압을 간접 측정하는 전자식 의료기기인 다기능전자혈압계와 관련해 ▲MDSAP이 요구하는 심사 항목, ▲품목 특성에 따른 심사 시 요구사항, ▲심사의 사전 준비, 신청, 심사 대응, 결과 관리 등이 포함됐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태국 EPA 제5차 공식협상 개최

한국과 ASEAN의 유망시장인 태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제5차 공식협상이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방콕에서 열렸다. 양국은 지난 2024년 3월 EPA 협상 개시 선언 이래 4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공통으로 체결한 한·ASEAN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대비 높은 수준의 양자 EP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집중해왔다. 이번 제5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지속가능개발 등 13개 분야에서 시장개방·규범·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미국發 관세 조치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양자 통상협정은 우리 수출의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ASEAN 2위 경제대국이자 유망시장인 태국과의 조속한 EPA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숙의 브뤼셀 통신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작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언급하며 EU와 무역불균형을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EU는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면서도 무역 파트너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KOTRA의 강지숙 브뤼셀무역관이 EU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의 對美 관세 조치와 통상정책을 생생하게 전하고자 한다.

단순 맞대응 넘어 무역 파트너 다각화 나서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EU의 대응 동향



강 지 숙 | KOTRA 브뤼셀무역관 차장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과 동시에, 미국의 통상정책이 다시 강경해지고 있다. '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 무역적자 해소, 국가안보 강화 등을 명분으로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은 현재까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된 행정 조치를 발표할 때마다 EU는 '비례적 대응(proportional response)'을 경고하며 보복 조치를 시사해 왔지만,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우선시하며 갈등 확산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4월 초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를 선언하자, EU도 원래 4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보복 조치를 동일하게 90일간 유예하며 균형적 대응에 나섰다. **현재 EU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 조치와 함께, 비관세장벽 활용,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무역 파트너 다변화 등 다양한 통상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EU의 대응 동향, EU가 추진 중인 다양한 통상정책과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 미국의 관세 조치와 EU의 대응 동향

1. 미국의 對캐나다, 멕시코, 중국 관세 부과 발표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히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U는 이미 2024년 하반기부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관세 정책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초기 대응 전략으로는 ▲미국産 LNG 수입 확대, ▲EU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 삼아온 對美 무역 불균형[1]을 완화하려는 접근을 취해왔다. 동시에 EU는 보복관세 대상 목록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EU가 미국을 매우 불공정하게 대우해 왔다"며 EU産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사하자, EU 내부에서는 보다 강경한 대응 기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2월 2일, 올라프 질 EU 무역 담당 대변인은 "미국이 자의적 또는 불공정하게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발표

2025년 2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2월 10일과 11일 두 차례 성명서를 통해 EU 집행위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EU의 단호하고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약속했다. 특히 유럽철강협회(EUROFER)와 유럽알루미늄협회(European Aluminium)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EU와 미국의 경제적 관계를 훼손할 것이며, EU 집행위에 미국과 즉각적인 대화를 개시해 유럽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워싱턴 D.C.로 출국해, 2월 19일 하워드 루트닉 당시 美 상무부장관 지명자, 제이미슨 그리어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 케빈 해싯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했으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결국 EU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대응해, 3월 12일 두 단계로 구성된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1단계는 2018년과 2020년에 미국을 대상으로 부과했으나 현재 유예 중인 기존 대응 조치(미국産 수출품 약 80억 유로 규모)를 4월 1일부터 재개하는 것이며, 2단계는 EU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중순부터 새로운 보복 조치(약 180억 유로 규모)를 발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3월 20일, EU는 1단계 조치의 시행 시점을 4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이는 미국 행정부와

1)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의 對美 상품무역 흑자는 2021년 1,669억 유로, 2022년 1,495억 유로, 2023년 1,566억 유로였으며, 對美 서비스 무역적자는 2021년 878억 유로, 2022년 1,055억 유로, 2023년 1,086억 유로 규모다. 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countries-and-regions/united-states_en

논의하기 위한 추가 시간을 확보하고, 회원국들과 보복 조치 대상 품목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려는 조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 관세 대상 품목이었던 미국産 버번위스키는 최종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産 와인에 대해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 주류 업계가 보복 조치를 우려해 해당 품목의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 것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3.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27일 모든 수입 차량과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4월 3일에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공개하면서 EU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같은 날 트럼프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EU 주요국 인사들뿐만 아니라 식음료,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계에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상호관세 발표 직후인 4월 4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EU 대사들과 대응 조치를 모색하고, 이어 4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무역장관 회의에서도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같은 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자동차 및 철강 산업 관계자들과 전략적 대화를 나눴으며, 4월 8일에는 제약 산업 관계자들과 회동을 이어갔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응 논의 결과, EU 집행위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보복관세 부과, ▲역내 무역 전환 차단, ▲국제 공조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U가 예고한 보복관세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EU 회원국 내 투표를 거쳐 세 단계에 걸쳐 시행될 계획이었다.

● EU가 추진 예정인 보복관세 조치 개요[2] ●

구분	적용 개시일	주요 품목 및 관세율
1차	2025년 4월 15일	- 부속서 I에 명시된 품목에 대해 10%와 25%의 추가 관세 적용 - 주요 품목 : 농산물 및 식품류, 담배, 화장품 및 향수류, 의류 등
2차	2025년 5월 16일	- 부속서 II와 III에 명시된 품목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 적용 - 주요 품목 :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
3차	2025년 12월 1일	- 부속서 IV에 명시된 품목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 적용 - 주요 품목 : 대두와 아몬드

주 : EU의 보복관세 조치는 현재 90일간 유예된 상태이며,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2) European Commission(2025. 4. 14.).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25/778 on commercial, rebalancing measures originating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Official Journal L 2025/778)'. 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500778

4.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발표

2025년 4월 9일, EU 회원국들이 對美 보복조치 시행 여부에 대한 투표를 가결함에 따라, 4월 15일부터 미국産 특정 제품에 10% 또는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EU 집행위도 다음 날 동일하게 보복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EU가 준비한 보복관세 조치는 미국의 유예 조치에 맞춰 7월 14일까지 연기됐다.

4월 14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워싱턴 D.C에서 미국 측과 회담을 진행했으며, 현지 언론에 따르면 EU측 주요 협상 의제는 ▲산업재(자동차 포함)에 대한 상호 무관세(zero-for-zero) 제안, ▲철강·알루미늄 공급 과잉 문제, ▲반도체 및 의약품 공급망 회복력 확보 등이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유예 기간 동안 EU는 미국과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4월 17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도 했다.

● 미국의 관세 조치와 EU의 대응 동향 타임라인 ●



출처 : 미국의 관세 조치와 EU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저자 재구성

II. EU 통상정책의 변화

미국의 연이은 관세 강화 조치에 대해 EU는 신중하게 보복 조치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EU의 대응은 단순한 맞대응에 그치지 않는다. **EU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율성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점차 EU 통상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EU는 ▲철강 세이프가드 개정,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무역 파트너 다각화 등 보다 구조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EU가 추진 중인 이 세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통상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철강 세이프가드 개정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로 타국의 對美 수출 물량이 유럽으로 우회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EU는 이에 대응해 철강 세이프가드 개정안[3]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3월 25일 EU 관보에 게재됐으며, 해당 조치는 3월 26일부터 발효됐다. EU 집행위는 2019년, 무역 전환과 수입 증가로 인한 EU 철강 산업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했으며, 이후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해당 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 왔다. 이번 개정 역시 2024년 12월부터 진행된 조정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글로벌 철강 시장 둔화와 역내 수요 감소를 반영해, 2025년 7월 1일부터 연간 관세율 할당(TQR, Tariff-Rate Quota) 증량률을 기존 1.0%에서 0.1%로 축소한 데 있다. 아울러, EU는 수입품이 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즉 수입 압력 수준에 따라 대상 품목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로 잔여 쿼터를 제한하는 등 차등적 조치를 도입했다. 또한, 대형 수출국이 잔여 쿼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4분기 잔여 쿼터 접근을 제한했으며, 수입 압력이 높은 그룹(그룹 1, 2)에서는 쿼터 이월 시스템을 폐지하고, 수입 압력이 낮은 그룹(그룹 3, 4)에서는 기존 이월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세이프가드는 WTO 규정상 최대 8년까지만 적용 가능하므로, EU는 현행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26년 6월 만료 예정인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2025년 3분기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2.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EU는 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R&D 투자 확대, 역내 생산기지 확충, 공급망 재편 등을 추진하며 산업 기반의 자립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EU가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제조·공급 역량을 확보하려는 중장기 전략으로 해석된다. 최근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가지 산업 행동계획은 각각 자동차 산업과 철강·금속 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정책 지원의 우선 분야와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유럽 자동차 산업 행동계획

2025년 3월 5일, EU 집행위는 '유럽 자동차 산업 행동계획(Industrial Action Plan for the European Automotive Sector)'[4]을 발표했다. 이는 1월 30일과 3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 나눈 '유럽 자동차 산업 미래에 관한 전략적 대화'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 기반 강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혁신 및 디지털화, ② 청정 모빌리티, ③ 경쟁력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 ④ 기술·사회적 차원,

3) European Commission(2025. 3. 25.). 'Amendment of safeguard measures on steel products(Official Journal L 2025/612)'. 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500612

4) European Commission(2025. 3. 5.). 'Industrial Action Plan for the European automotive sector'. 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635

⑤ 시장 접근 확대 및 공정 경쟁 보장 등이 포함된다.

(2) 유럽 철강·금속 산업 행동계획

이어 3월 19일에는 '유럽 철강·금속 산업 행동계획(European Steel and Metals Action plan)'[5]이 발표됐다. 이 계획은 3월 4일 출범한 '철강 산업의 미래 전략적 대화'에서 산업계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립된 것으로, 철강 및 금속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 산업 보호를 위해 6대 핵심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 청정·저렴한 에너지 접근 보장, ② 탄소 누출 방지[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연계], ③ 역내 산업 보호 및 역량 증대, ④ 순환성 촉진, ⑤ 일자리 보호, ⑥ 탈탄소화 가속화 지원 등이 포함된다.

3. 무역 파트너 다각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와 불확실한 통상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EU는 대외 의존도 분산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무역 파트너 다각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 지역과의 양자·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현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전략적 자원 접근성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EU는 최근 몇 년간 ASEAN 회원국들과의 협상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과는 장기간 중단됐던 협상이 재개됐고, 인도네시아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을 19차례나 진행하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2025년 2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인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양측은 연내 FTA 타결에 합의했다. EU·인도 FTA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아랍에미리트, 케냐와의 협상 진전이 주목된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는 2025년 4월 CEPA 협상이 공식 개시됐으며, 케냐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2024년 7월 1일 자로 발효,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중남미의 경우, 2024년 12월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FTA 협상이 타결됐으며, 2025년 1월에는 멕시코와의 현대화된 글로벌 협정 협상이 공식 타결됐다.

또한, EU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핵심 원자재 분야 협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리튬, 희토류, 망간, 흑연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이 지역은, EU가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자원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핵심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4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첫 EU·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EU와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이 핵심 원자재 분

5) European Commission(2025, 3. 19.). 'Action Plan on Steel and Metals'. 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805

야 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며 본격적인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이처럼 EU는 다자주의 기반의 통상 질서 회복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목표로, 통상 파트너의 지리적·정치적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무역 규범의 준수를 강조하는 동시에, 자국 산업 보호와 기후 정책 등 새로운 가치 기준을 통상정책에 결합하며 정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향후 EU의 통상 환경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며, 우리 기업 또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최근 EU의 무역협정 추진 동향 ●

국가 또는 지역	구분	내용
말레이시아	협상 중	- 2010년 협상 시작, 2012년 중단 후 2025년 1월 재협상 개시
아랍에미리트	협상 중	- 2025년 4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
인도	협상 중	- 2007년 협상 시작, 2013년 중단 후 2022년 재개 - 2025년 2월 27 ~ 28일, 뉴델리에서 열린 EU·인도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2025년 내 FTA 타결에 합의, 이 협정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FTA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
필리핀	협상 중	- 2015년 협상 시작, 2024년 3월 FTA 협상 재개
태국	협상 중	- 2013년 협상 시작, 2014년 중단 후 2023년 3월 협상 재개 - 2025년 연내 협상 타결 목표
인도네시아	협상 중	- 2016년 7월부터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진행 중 - 2024년 7월까지 총 19차례 협상 완료, 2025년 상반기 내 협상 타결 목표
멕시코	협상 타결	- 2025년 1월 17일, 현대화된 글로벌 협정에 대한 협상 공식 타결 - 해당 협정이 양측의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기존 협정 대체
메르코수르	협상 타결	- 2024년 12월, 25년에 걸친 협상 끝에 FTA 타결 - 유럽의회 표결과 회원국별 비준에 따라 실제 발효 여부 결정
스위스	협상 타결	- 2024년 12월, 기존 5개 협정의 현대화 협상 타결
칠레	발효	- 2023년 12월 포괄적기본협정(AFA)과 임시무역협정(ITA, Interim Agreement on trade) 체결 - 2025년 2월 1일 임시무역협정(ITA) 발효
뉴질랜드	발효	- 2023년 7월 FTA 협정 체결, 2024년 5월 1일 발효
케냐	발효	- 2023년 6월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2024년 7월 1일 발효

출처 : EU 집행위원회 무역협정 페이지[6)]

6) 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negotiations-and-agreements_en

III. EU 통상정책 전망과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EU는 단기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역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EU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목표로 한 중장기 통상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 조치의 적극적 활용, 산업 경쟁력 제고, 무역 파트너 다각화 전략 등은 EU의 통상정책이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EU는 '가치 기반 통상정책(Value-based trade policy)'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기후변화, 노동, 인권,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무역정책과 전면 연계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역내 산업 보호와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위한 비관세장벽, 규제 강화, 무역안보 조치 등이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국 간 무역 갈등이 일시적 마찰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관세·비관세 등 각종 무역 조치가 상시화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EU의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기준 강화에 대응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 대응 역량을 조기에 확보해야 하며, EU 역내 생산 거점 마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매체 폴리티코(Politico)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는 가운데, 여러 국가들이 유럽(EU)의 안정성과 신뢰를 선택하고 있다"며, 예측 가능한 무역 파트너로 부상 중인 EU를 강조한 바 있다.

미국과 EU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통상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나, 자국의 경제·산업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경향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통상 리스크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고,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 EU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대 1,731% 관세가 '0원'으로

"美·中 관세전쟁에 우회수출" 관세청 끝까지 막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미국發 관세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밝힌 가운데 관세청이 한국을 활용한 우회수출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다시 살아나며, 한국이 불법 우회수출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Made in Korea'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국내 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관세청은 4월 21일 서울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산 둔갑 우회수출 집중단속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관세청 이광우 조사총괄과장은 최근 5년간 총 176건, 4,675억 원 규모의 불법 우회수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광우 조사총괄과장(출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청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국산으로 둔갑한 우회수출 적발 건수는 15건이다. 하지만 2022년에는 48건, 2,408억 원 규모가 적발됐으며 2023년에는 99건, 1,188억 원 규모가 적발됐다. 작년에는 적발 건수 및 규모 모두 감소했지만 올해에는 3월까지 4건, 295억 원 규모가 적발되는 등 이미 작년 연간 적발액을 넘어섰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산으로 둔갑한 우회수출 적발 중 對美 수출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2024년 對美 수출이 건수 기준 40%, 금액 기준 62%를 차지했으며 올해(1~3월)에는 건수 기준 75%, 금액 기준 97%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광우 조사총괄 과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美·中 관세전쟁의 여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美·中 관세전쟁으로 우회수출 단속 수사를 많이 시작했다는 것.

● 국산 둔갑 우회수출 적발 현황 ●

(단위 : 건, 억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15	436	48	2,408	99	1,188	10	348	4	295
미국	3	67	11	831	14	37	4	217	3	285
비율	20%	15%	23%	35%	14%	3%	**40%**	**62%**	**75%**	**97%**

이 과장은 "통계는 검찰 송치 기준으로 사건 발생 시기는 1~2년 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번에도 우회수출 위험이 커졌다고 본다"며, "한국보다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한국을 우회할 이유가 충분하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주된 목적이 수입국의 반덤핑관세 회피, 고관세율 회피, 수입규제 회피, 한국産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과 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의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고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수입국의 수입규제 또는 세관 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대 1,731% 관세 0으로 낮추려 중국産 → 한국産으로 둔갑

美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을 우리나라로 거쳐 우회수출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한국 제품으로 둔갑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부산세관 이동현 조사팀장은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다 적발된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이 중국産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고자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업체 A를 이용해 중국産 매트리스 120만 개를 해당 업체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반송신고필증 및 원산지증명서 등 수출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 작성해 불법 수출한 경우였다. 이들이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208회에 걸쳐 국내 반입한 매트리스는 740억 원 규모에 달했다. A업체 외에 22곳의 국내업체 명의를 사용해 중국産 매트리스를 수입하는 척하면서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반송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수입자가 한국産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면 허위로 작성한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와 한국에 설립한 A업체의 제조공정 사진 등을 제시해 적발을 피했다.



(좌) 보세창고 내 적재된 중국산 매트리스 (우) 원산지를 허위 기재 후 미국에 불법 수출(출처 : 관세청, 편집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이 조사팀장은 "한국産 매트리스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0%이지만, 중국産은 최소 97%에서 최대 1,731.75%다. 미국과 중국 간 높은 관세율을 피하고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입 막히자 한국 경유한 중국産 CCTV

미국 내 수입과 사용이 제한된 중국産 CCTV 카메라 등이 한국産으로 둔갑된 사례도 있었다. 2022년 중국에서는 IP 카메라를 해킹해 개인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후 미국에서는 중국産 통신·영상장비 사용 및 수입을 차단했고 B업체는 중국産 CCTV 카메라를 부분품 상태로 수입해 이를 국내에서 조립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수출했다. B업체가 들여온 CCTV 카메라 부분품은 193억 원에 달한다.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이혜영 주무관은 "B사는 기존 CCTV를 제조해 수출하던 회사로 중국에서 생산된 부분품을 중국에서 보내준 조립공정대로 단순 조립만 했다"며, "원산지가 한국産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미국産 고성능 반도체를 국내 차명 법인 명의를 활용해 국내로 수입한 다음 실제 가격의 1% 수준의 저가 반도체로 위장해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재 해당 고성능 반도체는 미국 및 한국 등에서 전략물자로 지정돼 수출 통제 대상이다. 불법 수출한 C씨는 국내에 페이퍼컴퍼니 2곳을 설립해 수출·수입에 각각 사용했다.

부산세관 조사총괄과 특수수사2팀의 김우용 주무관은 "C씨는 국내 대기업에 반도체를 판매하고 있었고 기존 운영업체에는 영향이 없도록 가족과 직원 명의로 별개 기업을 만들었다"며, "수출물품

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격을 100분의 1로 신고한 것뿐이다. 저성능 반도체는 수출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는 수출신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대에 판매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對中 반도체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데다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이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보니 한국이 우회수출의 거점이 될 우려가 크다.

이광우 과장은 "중국産 제품이 한국을 경유해 우회수출하는 이유 중 한국産 프리미엄도 있다. 우리는 우회수출 등 수사를 꾸준히 해온 탓에 국가신뢰도가 높아 對美 수입 시 검사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우회수출로 이용되는 데에는 美·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혜영 주무관은 "실제로 FTA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가령 한국과 튀르키예의 FTA는 2013년 5월 1일 발효됐다. 튀르키예와 FTA를 맺지 않는 국가가 한국을 경유해 서류상 원산지를 세탁해 무관세로 튀르키예에 수출하는 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광우 조사총괄과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통계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우회수출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위법행위가 있을 것이라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에 따르면 한국이 25%로 높은 수준이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정부가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상을 하는 만큼 앞으로 관세 추이를 눈여겨 봐야겠지만, 여전히 한국을 이용해 우회수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관세청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수출 차단에 나섰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다.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등을 국산 제품으로 허위 작성해 미국 등 수입국(수입자)에 제출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조사단은 국가정보원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기관과 수사 공조 및 정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의 일환으로 4월 21일 서울세관에서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가 열렸다.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피해품목 협회와 HSI, CBP 등 국내외 기관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더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비당사국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페루 FTA
질문	페루산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통관 후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한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한·페루 FTA 협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페루산 제품이 미국에서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된 후 다시 우리나라로 재수출되는 경우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FTA 적용 요건 및 직접운송원칙

(1) 개요

상품무역 환경에서 FTA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활용되며,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각 협정별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 협정에 따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FTA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5가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5가지는 ① 거래당사자 요건, ② 품목 요건, ③ 원산지 상품 요건(원산지 결정기준), ④ 절차적 요건, ⑤ 운송 요건(직접운송원칙)을 말한다.

그중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인 원산지 상품 요건(원산지 결정기준 요건)이 중요하다. 그러나 특혜관세 적용 시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인지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FTA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협정에서 정하는 운송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여부다.

(2) 직접운송원칙

직접운송원칙(운송 요건)은 FTA 적용 요건 5가지(거래당사자 요건, 품목 요건, 원산지 상품 요건, 원산지절차 요건, 운송 요건) 중 하나로 수출물품의 원산지와는 관계없이 물품의 물리적 이동이 FTA 체결 당사국 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직접운송원칙은 모든 FTA에서 직간접적으로 규정돼 있는 내용으로 FTA 적용에서 중요한 원산지 개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꼭 충족해야 한다.

FTA에서 직접운송원칙을 도입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협정의 수출 당사국에서 발송된 물품이 수입 당사국에 도착한 물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물품이 운송과정에서 추가로 가공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과 뒤바뀌게 될 가능성(원산지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협정을 체결한 양 당사국의 물류산업의 활성화다.

제도 목적상 필요해 보이는 직접운송원칙은 그 예외가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칙대로만 엄격하게 운송 요건을 적용한다면 다른 국가를 경유하거나 환적하는 물품은 모두 FTA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물류 실무상 환적이나 경유는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화물에 대한 FTA 적용을 무조건 배제한다면 FTA 활용도가 급감할 위험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협정에서는 직접운송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① 경유·환적국 내에서의 작업범위 안에서, ② 세관의 통제 하에 경유·환적이 이뤄지고, ③ 기타 다른 추가 충족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직접운송이 이뤄진 것으로 봐 FTA를 적용한다.

직접운송원칙은 해당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미주형, 유럽형으로 나눠서 설명한다.

미주형은 '직접운송될 것'을 규정해 놓지 않고 통과나 환적을 하는 경우 비당사국에서 추가 공정(가공)을 수행하거나 해당 비당사국 세관당국의 통제에 있지 않다면 FTA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간접적으로 직접운송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형은 협정에 '직접운송될 것'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그 대신 일정 조건에서 직접운송에 관한 예외를 둬 당사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경유하거나 환적해도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예외를 마련한 것이다.

(3) 한·페루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규정

질문 & 답변 사례를 검토하기 전 이번 호의 주제인 한·페루 FTA의 직접운송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페루 FTA는 협정문에서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FTA로, 원산지 규정(제3장) 제3.14조(직접 운송)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페루 FTA는 원산지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원산지 상품은 양

당사국 간 직접운송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직접운송이 되지 않으면,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①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운송되고, ② 그러한 비당사국에서의 환적 또는 일시적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경유해 운송된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직접운송에 관한 증빙자료를 ① 경유 또는 환적의 경우, ② 보관의 경우로 나눠 규정하는데, ① 경유 또는 환적의 경우에는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국가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 또는 결합 운송 문서와 같은 운송 문서가 제출돼야 하고, ② 보관은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국가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 또는 결합운송 문서와 같은 운송 문서와 더불어 그 비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 작업을 승인한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문서가 제시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반영해 우리나라에도 직접운송에 관한 일반규정이 존재하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법」)**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에서 직접 운송의 요건 등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FTA관세법」 제7조 제2항에는 직접운송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규정돼 있다. 다만, 「FTA관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듯이 결국 국내법령보다 협정별 규정이 우선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을 안내한 바 있는데,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는 개별 협정과 국내법령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요건과 입증서류가 다른 경우 협정을 우선해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즉, 각 협정의 해석이 FTA 특혜관세 적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또한 제3국 장기간 보관 또는 컨테이너 개폐 등으로 물품 조작 위험이 큰 경우에 한해 직접운

송 입증서류를 요구하며 제3국 단순 경유와 같이 비당사국에서 물품의 조작 위험이 없는 경우(제3국 경유 전후에 컨테이너 봉인 번호가 동일한 경우 등)에는 입증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한·페루 FTA는 전체 운송경로를 복합(결합) 운송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복합운송서류라 함은 단독으로 또는 같이 제시됐을 때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동하는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운송 서류로 항공화물운송장, 육상운송증, 선하증권, 복합(결합)운송 문서 등이 있다. 또한 세관통제 또는 비조작에 관한 사항은 세관 또는 권한있는 다른 기관 발행 서류로 확인 가능한데, 이러한 확인 서류로는 세관의 비조작증명서, 재수출증명서, 보세구역반출입증 등이 있다.

한·페루 FTA에 대한 직접운송 관련 규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협정	비당사국 경유 요건				비당사국 경유 시 직접운송 입증서류		
	세관 통제	사유	불 인정	인정 (공통)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 및 운송 필요 공정	전체운송경로	세관 통제	비조작
페루	○		거래·교역	재포장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복합(결합)운송서류 등 (경유·환적 또는 보관 시)	관세당국 또는 권한있는 기관 서류(보관 시)	

3. 질문 & 답변의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질문은 페루산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통관 후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한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한·페루 FTA 협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다. 직접운송에 관한 부분의 해석상 관련 쟁점은 일반 FTA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원산지'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해당 물품은 다른 국가에 수입됐다가 다시 수출된다고 해서 원산지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 등의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는 페루산으로 인정 가능할 것이다.

다만, 특혜관세 적용 목적인 FTA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며, 결국 '한·페루 FTA상'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가 쟁점이 된다. 일단 비당사국인 미국을 거쳤다가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운송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 한·페루 FTA 직접운송

한·페루 FTA의 서문에서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페루)을 말하며, 한·페루 FTA의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인 제3.14조 제1항에서는 양 당사국 간(대한민국과 페루) 직접운송이 이뤄져야 하지만, 제2항에서는 직접운송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제2항에서 '비당사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페루가 아닌 다른 국가를 뜻하기 때문에 미국은 비당사국에 해당된다.

또한 직접운송의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운송된 상품, 그리고 ②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경유해 운송된 상품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페루에서 미국을 거쳤다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의 ①, ②를 충족하고 제3항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단 ①에서의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수입통관이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한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경유해 운송된 상품이라는 부분에서도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당사국의 보세구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문에서 미국으로 수입 후 우리나라로 재수출되는 물품은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되며, 관세청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하고 있다.

만약 미국에 수입이 이뤄졌다가 한·페루 FTA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① 페루·한국 간 직접운송을 하거나, ② 페루-비당사국-한국의 운송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직접운송의 예외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한·페루 FTA BWT 가능 여부

질문 & 답변 사례와는 별개로 비당사국에서의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보세창고도거래)에 따른 한·페루 FTA 적용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한다.

단순히 미국과 같은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서류를 갖춰 한·페루 FTA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페루-비당사국-한국으로의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비당사국에서의 BWT를 활용한 FTA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BWT는 여러 가지 사유로 제3국에 소재하는 보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그때의

수요자를 찾아 각 국가로 물품이 발송되는 형태의 거래로, 전 세계적인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용되곤 한다. 예를 들어 유럽에 소재한 회사에서 아시아 총판을 위해 싱가포르에 소재한 보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무역거래가 발생한 경우 싱가포르 보세창고에서 아시아에 소재한 각 국가로 물품을 송부하는 것이다.

한·페루 FTA는 화물이 환적되는 상황뿐 아니라 일시적인 보관이 이뤄져도 직접운송 규정을 충족할 수 있으나 비당사국에서 거래되거나 교역(trade or commerce)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존재한다. 즉, 물품을 페루에서 미국으로 송부한 상황에서 비당사국인 미국에서 거래 또는 교역이 이뤄진 경우 직접운송 규정을 위반해 FTA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협정에 따라 비당사국에서의 BWT가 가능한 협정도 있고 불가능한 협정도 있다.

한·EU FTA상 BWT를 통한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문의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EU FTA는 단일 탁송화물에 대해 규정하고,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BWT를 통한 한·EU FTA 적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산 물품을 비당사국 물류창고에 보관 후 그중 일부를 우리나라에 수입 시 독일 수출자가 국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협정관세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한·EU FTA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단일탁송화물이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때에는 그 제품이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반출이 없어야 하며, 협정에서 정한 공정(하역, 재선적, 보존공정) 이외의 공정이 없어야 하고, 비당사국에서 BWT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다른 사례로 한·영 FTA 발효 후 EU산 물품이 영국의 물류창고에 보관 후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BWT 거래)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와 관련해 한·영 FTA 발효 후 영국은 한·EU FTA의 비당사국이 되며, EU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영국 물류창고에 보관 후 그중 일부를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는 단일 탁송화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EU FTA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한·EU FTA가 아닌 다른 FTA의 경우 ① 비당사국을 통한 BWT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다르거나, ② 비당사국을 통한 BWT가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① 비당사국을 통한 BWT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협정은 대표적으로 한·ASEAN FTA를 들 수 있는데, 한·ASEAN FTA에서는 경유국에서의 거래·소비를 불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당사국에서의 BWT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경유가 지리적 이유(geographical reason)와 운송요건(transport requirement)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해 정당화돼야 하는데, 여기서 지리적 이유라는 것은 당사국이 내륙국 등으로 항구 등이 없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운송 요건은 수출 시 최종 수입국이 결정되고 선적했으나, 운송편(선박, 항공기)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비당사국에서의 판매가 이뤄짐을 목적으로 하는 BWT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협정은 ② 비당사국을 통한 BWT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미 FTA가 해당된다. 한·미 FTA에서 BWT가 가능한 이유는 직접운송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BWT를 금지하는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3국 보세창고에 장치했다가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때 계약해 수입당사국으로 운송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경유국 세관당국에서 단순경유임을 확인해 발행한 서류가 필요할 것이다. 한·미 FTA의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3조 통과·환적에 대한 규정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EU FTA와 유사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또한 BWT가 인정될 수 있는데, 한·EFTA FTA의 경우 제3국에서의 '탁송품의 분리'를 허용하고 있고, 2020년 개최된 한·EFTA 제7차 공동위원회에서 양측 간 장거리 무역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 수출입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제3국에서 화물 보관, 분할 및 환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인정을 허용하도록 합의했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EFTA 국가로부터 최종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비당사국에서 보관된 후 일부가 분리돼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에도 직접운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보인다.

(4) 비당사국 수입 후 특혜관세 적용 가능 협정

대부분 FTA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해 다시 FTA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일부 협정에 존재하는 재수입물품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다면, FTA 특혜관세 적용이 이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수입물품에 대한 특례가 존재하는 한·페루 FTA는 제3.15조(영역 원칙) 제2항에서 "가.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나.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을 것"에 대한 요건이 해당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있지 않는 한, 어느 한 쪽 당사국으로부터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은 재반입 시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페루 FTA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물품이 비당사국으로 수출됐다가 재수입된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하고,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필요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다시 특혜관세 적용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ASEAN FTA나 연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경우 일부 비당사국(중간경유 당사국)에 수입됐다가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도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발급을 통해 특혜관세 적용이 이뤄질 수 있다.

'연결원산지증명서'란 협정 대상 물품이 당사국들의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중간경유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청을 받아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Original)을 근거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다.

직접운송원칙의 완화 및 FTA 특혜관세 적용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제도인 연결원산지증명서 규정은 각 협정에서 명시한 '직접운송' 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출 당사국에서 제조된 물품은 제3국에서의 경유 또는 환적을 거치지 않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운송돼야 하는 '직접운송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일부 협정에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 제도를 둬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된 물품이 중간경유 당사국에서 일시 보관된 후 수입당사국으로 재수출될 경우에도 FTA 관세특혜 적용이 가능하다.

연결원산지증명서는 동일한 FTA를 체결한 국가가 다수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중 동일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다수인 경우는 한·ASEAN, RCEP, 한·EU, 한·중미, 한·EFTA FTA가 있으나 오직 한·ASEAN 협정과 RCEP 협정에서만 연결원산지증명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EU FTA의 경우 EU 자체가 하나의 당사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결원산지증명제도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연결원산지증명서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규정하는 직접운송원칙 규정과 연결원산지증명서 규정을 연계해 살펴봐야 한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발급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관세청은 2022년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 지침」을 제정했으며,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각 협정문 및 관련 지침 등을 참고하면 된다. 특히 해당 지침에는 RCEP 및 한·ASEAN FTA의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 물품이 국내에서 수입통관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부 협정에서는 비당사국에서 수입통관이 이뤄진 뒤 제한적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일반적인 직접운송원칙의 측면에서는 비당사국에서 수입통관이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운송경로를 고려하는 수출입자 또는 관세사 등은 관련 직접운송 규정을 잘 확인해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강황추출분말의 HS Code

강황추출분말은 어느 호에 분류되나요?

문의하신 물품이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의 '기타'에 해당된다면 제1302.19-9099호로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에 해당된다면 제3203.00-300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9		기타
		9099	기타
3203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3000	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수입 / 견본품 수입

식품 원재료를 본격적으로 수입하기 전에 테스트용으로 15ℓ만 수입하려고 합니다. 견본품 수입과 관련해 정해진 용량이 있나요?

상업용 견본품은 제품 전체의 디자인·성능·성분·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주문(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입니다.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견본이라는 명확한 표시 등)로 처리돼 있어야 하며, 물품의 성질상 명확한 표시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수량이 극소수인 경우 세관장이 반입사유·물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견본품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수량 등 범위는 물품마다 별도로 규정돼 있지는 않으며,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심사 시 수입자가 제출한 해당 물품의 반입사유서 및 용도계획서, 회사의 규모, 물품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견본품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수통관 / 배송대행지 합산과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기 다른 판매처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배송대행지에서 같은 날짜에 개별 배송할 경우 합산과세에 해당될까요?

해외 직구 시 개인 특송물품의 경우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이와 같이 입항일 기준은 삭제됐으며, 만약 묶음배송(합배송)으로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이 1개일 경우, 합산과세 여부와 관계 없이 B/L 1개에 대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물품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대해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요건 / 반려동물 탈취제의 수입요건

제3307.90-9000호에 분류되는 애완견 탈취제의 수입요건이 궁금합니다.

제3307.90-9000호에 분류되는 '애완견 탈취제로 동물용 화장품 용도'로 검토할 수 있는 물품을 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표준통관예정보고서(화장품)],「화장품법」**

◦ 화장품(물휴지)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 중「화장품법」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 **[수입승인서],「위생용품관리법」**

다음의 위생용품은「위생용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위생용품관리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식당용 물티슈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약사법」**

1.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2. 동물용의약외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다음의 제품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방향제
   ◦ 탈취제
   ◦ 공연용 포그액

2. 다음의 제품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할당관세 추천의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해설

권 종 열 | 서울세관 심사총괄2과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돼지고기 등 축산물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돼지고기의 할당관세 추천에 관한 공무를 수탁받은 자다.

나. 원고는 피고의 2022. 6. 22.자 '2022년도 돼지고기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공고에 따라 2022. 6. 24.부터 2022. 7. 27.까지 ○○건의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를 완료하고, 2022. 6. 27.부터 2022. 7. 29.까지 위 할당관세 추천 물품을 소위 '이체판매방식(원고가 보세창고업자에 대해 갖는 물품 반환청구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내수판매업체에 판매했다.

다. 원고는 피고의 2022. 8. 5.자 '2022년도 돼지고기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일부개정'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따라 2022. 8. 17.부터 2022. 9. 30.까지 ○○건(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를 완료하고, 2022. 8. 17.부터 2022. 10. 17.까지 이 사건 물품을 이체판매방식으로 내수판매업체에 판매했다.

라. 한편 이 사건 공고에서는 추천물량을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 2022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에서 배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이하에서 '이 사건 처분' 또는'이 사건 취소 결정'이라 한다)했다.

마.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고(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3구합51236 판결, 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 2심에서는 원고의 소를 각하했으며(서울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누56851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상고를 포기해 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 원고 주장 및 1심 판결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서, 이 사건 공고 10. (가)항에서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11항에서 추천배제를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다(이하 '1주장'이라 한다).

2) 이체판매는 이 사건 물품 판매 이전에도 동일하게 이뤄졌던 방식으로, 이 사건 공고 10.(가)항에서 규정한 '추천물량을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한 것에 해당한다(이하 '2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모든 사실관계를 밝혀 이 사건 공고의 주체인 피고에게 '이체판매 방식의 매수인이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할당관세를 추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고, 피고는 "이체판매는 이미 판매를 완료한 것이므로 계속 할당관세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이체판매를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본다는 유권해석하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할당관세 추천을 했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유권해석에 관한 원고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고 11항에서 정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할당관세 추천을 배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이하 '3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하는 것이므로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지 않은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할당관세 추천이 이뤄짐에 있어 어떠한 허위서류 제출이나 기망을 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시장에 공급할 의무를 종국적으로 다한 점,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수억 원의 관세를 부과받을 상황에 놓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은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법리를 위반해 이뤄진 것이다(이하 '4주장'이라 한다).

나. 1심 판결의 요지

1) 이 사건 공고는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 법령과 결합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2) 이 사건 물품이 반출기한 내에 보세구역에서 물리적으로 반출돼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고 단순히 이체판매된 것만으로는 이 사건공고 10. (가)항에서 정한 '추천물량을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3) 이 사건 공고의 상위 법령에 이 사건 공고 11항과 같이 추천물품의 보세구역에서의 반출 기한 및 위반 시 할당관세 추천 취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체판매 방식만으로도 할당관세 추천과 관련해 여하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4)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해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보세구역 반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그 주장과 같이 다액의 과세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공익적 요청이 원고의 기득권, 신뢰, 법적 안정성의 보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각각의 이유로 원고의 1), 2), 3), 4)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대상판결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소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했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취소 결정을 했다.

다만 이는 피고가 종전에 행했던 할당관세 '추천'의 취소에 해당한다. 그 '추천' 자체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춰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취소하는 이 사건 취소 결정 역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취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① 추천기관(피고)의 추천은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이다, ② 적어도 추천기관의 할당관세 추천 거부 또는 할당관세 추천 취소는 처분성이 인정돼야 한다, ③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에 관한 법리에 비춰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내에 모두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다. 하지만 위 ①항 기재 논거는, 법리적 결론의 논증 과정 내지 법적 근거 중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와 같은 추천기관의 추천은 행정 내부적·중간적 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의 추천과 같은 중간 결정에 다음 단계의 처분권자인 세관장 등이 구속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추천' 내지 이를 취소하는 이 사건 취소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위 ②항 기재 주장과 관련해,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4832 판결에서 부당한 추천 거부의 경우에도 과세처분 단계에서 추천 거부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이상, 그 추천거부 행위(내지는 이 사건 취소 결정과 같은 추천 취소 행위)의 처분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거를 상정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추천 거부(내지는 이 사건 취소결정과 같은 추천 취소)를 당한 수입업자가 일단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관세신고·납부를 한 다음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되면

그 관세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필요성만으로 추천 거부 내지는 추천 취소의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힘들다. 위 ③항 기재 주장은 결국 본안 내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으로서, 처분성을 인정해야 할 논거로 삼기는 곤란하다.

4. 대상판결에 대한 해설

가. 할당관세 개요

관세할당제도(TRQ, Tariff Rate Quotas)는 일정한 수량까지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저율관세할당물량',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주로 농축산물 수입 시 많이 적용된다.

관세할당제도 중 「관세법」 제71조에서 규정한 할당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일정한 수량[1]까지 수입될 때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2]을 적용한다(「관세법」 제71조 제1항). 또한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높은 관세율[3]을 적용한다(「관세법」 제71조 제2항).

이와 같은 할당관세는 내수용 특정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필요한 일정 물량을 할당하고 이에 대해 저율의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물자수급의 원활을 기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4]

위 할당관세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해당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하며(「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해당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

1)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바(「관세법」 제71조 제1항 본문 후단), 이와 같이 수량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전량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2) 기본세율 -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

3) 기본세율 +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

4)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275 판결

나. 관련 법리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정해진 일정 수량 범위 안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절차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수입업자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자격에 관해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해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서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쳐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고 할 수 없어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한다. 세관장은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해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입업체가 추천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고, 추천기관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추천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천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추천은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받게 될 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 1차적으로 심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 등에 의해서 관세경정부과처분의 형태로 이뤄진다. 따라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5)]

다.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6)] 이에 대해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7)]

또한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5)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34417판결

6)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7)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8)]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며[9)], 그러한 고려에 따라 불복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10)]

또한 행정청의 행위를 처분으로 봐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거나[11)], 행정청의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달리 이에 대해 다툴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12)]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2) 할당관세 추천의 처분성 여부 판단 사례

종래에 다음과 같이 하급심 판결에서 할당관세 추천(불추천)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가 나뉘고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선고 2013구합15705 판결[13)], 서울행정법원 2015. 3. 27. 선고 2014구합54905 판결[14)],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2구합28360 판결[15)],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2구합28728 판결[16)] 등에서는 "추천기관은 추천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고, 할당관세 추천을 받지 못한 수입업체는 할당관세율을 적용받게 못 하는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추천기관의 추천(불추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2013. 9. 26. 선고 2012구합28575 판결[17)], 서울행정법원 2013. 9. 26. 선고 2012구합28223 판결에서는 "대한석유협회의 할당관세 적용대상 수량의 추천행위가 있으면, 관세청은 세율이 경감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산정하는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관세청의 관세와 관련된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추천행위는 이를 구성하

8)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9)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등
10)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2365 판결
1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1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13)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5누36388 판결로 확정됐다.
14)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누41397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로 확정됐다.
15)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3누20938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두1267 판결을 거쳤다.
16)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3누20945 판결, 대법원 2015. 6. 24.자 2015두1182 판결을 거쳤다.
17)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4. 11. 7. 선고 2013누29249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두15498 판결을 거쳤다.

는 일련의 절차에 불과하다. 관세할당 추천을 받더라도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추천서를 반납하여야 하고, 행정상의 착오 등으로 할당추천물량에 차이가 발행되면 익월 할당물량 추천 시 정산이 가능한 관세할당 추천은 한계수량 산정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그 자체로 완결된 효력을 갖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수입자는 추천기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정해진 일정 수량 범위 안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그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추천은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받게 될 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 1차적으로 심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 등에 의해서 관세부과처분의 형태로 이뤄지므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바, 할당관세 추천이나 그 취소는 행정관청 내부행위나 중간행위라고 볼 수 있다.[18]

행정관청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나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 행정처분에 선행해 내부사무처리 절차상 이뤄지는 중간단계의 처분 및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19]

그러나 행정기관의 내부행위나 중간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가져 오거나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20]

앞서 살펴봤듯이 추천기관의 추천이나 추천취소는 할당관세 적용이나 배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당관세 적용·비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이 하는 것이므로, 할당관세 추천이나 추천 취소는 그 자체로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천 취소 이후 조만간에 세관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나 경정처분[21]이 예정돼 있어 이를 조기에 다툴 기회가 있다. 더욱이 추천 취소의 처분성을 인정해 이를 다툰 결과 추천의 효력이 있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추천이 세관장을 구속하지

18) 이상덕,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114호(2017년 하), 법원도서관, 15면

19)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20)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24. 1331 ~ 1333면

21) ⅰ) 추천기관의 추천이 취소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여 당초 적용받은 할당관세를 납부한 다음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였다가 세관장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ⅱ) 세관장이 당초 적용받은 할당관세를 배제하는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않으므로 세관장은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바, 추천 취소에 불복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그 처분성이 인정되더라도 분쟁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추천기관의 추천 취소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대상판결에서는 추천기관의 추천 거부나 추천 취소 이후 세관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나 경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다는 점만을 들어 그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기관의 내부행위나 중간행위라고 하더라도 불복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거나[22] 분쟁을 조기·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23]에는 그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나 대상판결은 이러한 점을 함께 검토해 처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불복청구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바로 처분성을 부인한 논리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대상판결 이전에 하급심 판결에서 할당관세 추천(불추천)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가 나눠지고 있었으나, 대상판결이 할당관세 추천이 세관장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24]이 나온 이후 그 법리를 반영해 할당관세 추천 취소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대상판결로 추천이나 추천 취소의 처분성에 대한 논란이 종식됐다고 볼 수 없어 향후 이를 명확히 하는 대법원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22)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2365 판결
2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24)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34417 판결

마일드 하이브리드(Mild Hybrid) 자동차의 품목분류

김 성 채 | PWC 관세법인

1.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2017년 HS 개정

2017년 개정 HS 이전의 제8703호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다.

87.03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10 - 설상주행용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 기타의 차량(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에 한한다)
8703.21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8703.22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8703.23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8703.24 --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기타의 차량[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에 한한다]
8703.31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8703.32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8703.33 --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8703.90 - 기타

2012년, 혹은 그 이전의 HS를 기준으로 보면 제8703호에서 가솔린 엔진 차량은 제8703.2 소호 그룹에, 디젤 엔진 차량은 제8703.3 소호 그룹에 포함되고, 전기자동차는 제8703.90 소호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된다.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품목분류 쟁점은 2001년도의 제27차 및 제28차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HS위원회에서 최초로 논의됐다.

논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품목분류함에 있어 이를 소호 제8703.2호의 불꽃점화식 피스톤 엔진 차량과 제8703.90호의 기타(전기자동차) 차량이 결합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대략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 요소가 내연기관 엔진인지 전기모터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논지에 따라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해 제8703.90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과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 내연기관 엔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봐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 제8703.2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게 됐으며, 최종적으로는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를 적용해 제8703.22호로 결정됐다.

내연기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주된 근거는 당시 논의 대상인 쟁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가솔린 엔진은 전기모터에 비해 보다 높은 동력(최대출력대비 53kw/rpm 대 33kw/rpm)을 제공하고, 시동을 걸 때, 저속주행 시 또는 정지할 때만 전기모터가 관여하는 반면, 일반주행과 고속주행 시에는 가솔린 엔진의 지원을 받으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본질적인 특성은 내연기관 엔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결정 이후 전기모터가 내연기관에 비해 보조적이라는 대체적인 인식 아래 모터출력에 관계없이 엔진의 배기량에 따라 분류되던 관행이 전 세계적으로 큰 쟁점 없이 받아들여졌으며 그러한 관행 아래 제8703.2 소호와 제8703.3 소호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그밖에 수소차 또는 연료전지 차량은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내연기관 없이 전기모터를 이용해 구동되는 것이므로 소호 제8703.90호에 분류될 수 있다.

이후 2017년 HS 개정 과정에서 일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8702호와 제8703호 개정안을 제출했고, 일본이 제시한 개정안은 WCO HS위원회에서 별다른 수정 없이 받아들여져 2017년 HS에 반영됐다. 2017년 HS에서 제8703호의 소호 체계는 다음과 같다.

87.03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10 - 설상(雪上) 주행용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8703.21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8703.22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8703.23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8703.24 --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만을** 갖춘 것]
8703.31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8703.32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8703.33 --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8703.4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8703.50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

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8703.6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8703.70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8703.80 -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8703.90 - 기타

2017년 HS의 제8703호에는 제8703.2 소호와 제8703.3 소호의 용어를 개정해 내연기관 엔진만 갖춘 것을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추진용 전기모터를 갖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들 소호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내연기관 차량에도 다양한 전기모터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조시스템의 팬을 구동하는 블로워 모터나 연료펌프를 작동시키기 위한 펌프 모터, 엔진 시동 시 크랭크축에 초기 움직임을 부여하는 시동 모터, 와이퍼 작동, 창문 개폐, 조향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전기모터가 장착된다. 하지만 이들은 차량의 주행동력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전기모터를 갖췄다는 이유로 제8703.2 소호나 제8703.3 소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 이들 모터는 보통 12V 네트워크라 불리는 자동차 내 전기 시스템에 연결되거나 그 일부로서 작동한다.

아울러 제8703호에 새롭게 5개 소호가 신설되는데 (제8703.40 소호부터 제8703.80 소호까지) 이 중 무려 4개 소호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한 소호다. 일본의 개정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내연기관 엔진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그리고 충전 방식에 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과 기타의 두 가지로 구분해 총 네 가지 종류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소호 레벨에서 구분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분야에서 일본의 자신감 섞인 전망에서 비롯된 개정이라고 본다.

개정된 제8703호 체계 내에서 하이브리드가 아닌 일반 전기자동차는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제8703.80 소호에 분류된다. 수소차 또는 연료전지 차량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내연기관 없이 전기모터만 이용해 구동되는 것이므로 소호 제8703.80호에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분류체계에서 제8703.90호에는 사실상 분류되는 물품이 거의 없게 된다. 가솔린이나 경유가 아닌 천연가스, LPG, 바이오 연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결국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의 내연기관 형태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제8703.2 소호나 제8703.3 소호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태양광 자동차의 경우도 결국 자동차를 구동하는 동력은 전기모터에서 나오게 되므로 제8703.80 소호에 포함돼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제8407호, 제8408호 또는 제8501호의 엔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엔진, 즉 증기엔진이나 제트엔진 또는 풍력엔진을 사용하는

경우 제8703.90 소호에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현재 시장에서 이러한 자동차는 상업적으로는 무의미하다 할 것이므로 실무적 관점에서 본다면 제8703.90호는 사실상 빈(empty) 소호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 마일드 하이브리드(Mild Hybrid) 자동차의 품목분류

2017년 HS에서 제8703호 해설서에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량에 대한 설명이 추가됐다.

■ **HS 2017 제8703호**
피스톤 내연기관과 하나 이상의 전동기를 결합한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HEV : Hybrid Electric Vehicle)'라고 한다. 기계적 추진 목적으로, 이들 자동차는 소모성 연료와 전기 에너지/전력 저장 장치[예 : 축전지(electric accumulator), 축전기(capacitor), 플라이휠/발전기] 모두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HEV)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파워트레인 구성(예 : 병렬 하이브리드, 직렬 하이브리드, 동력분기나 직렬-병렬 하이브리드)과 **하이브리드화의 정도(즉, 완전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PHEV :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는 전력 그리드 아웃렛(grid outlet)이나 충전소에 플러그를 꽂아 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이다.

축전지 팩에 의하여 동력을 얻는 하나 이상의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EV : Electric Vehicle)'라고 한다.

해설서는 하이브리드화(hybridzation)의 정도에 따라 풀 하이브리드(Full Hybrid), 마일드 하이브리드(Mild Hybrid),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lug-in Hybrid) 등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구분이 존재한다. 다만, 품목분류 관점에서 이들이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차량으로서 제8703.40 소호 내지 제8703.70 소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2019년 9월, 제64차 HS위원회는 WCO 사무국의 제안에 따라 마이크로 하이브리드(Micro Hybrid)와 마일드 하이브리드라 불리는 차량의 품목분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사무국의 조사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통상 하이브리드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Micro Hybrid	시동/정지 기술을 사용하는 교류발전기/시동기가 내장된 차량. 시동/정지 기술이란 자동차가 정지 시 엔진을 완전히 끄고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재시동이 거리는 기술을 말함. 주행 시에는 내연기관 엔진으로만 구동됨. 非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 연료 효율이 10%가량 증가함.

Mild Hybrid	Micro Hybrid와 매우 유사하나 내장된 교류발전기/시동기가 업그레이드돼 차량 추진에 도움을 주는 전기적 구성 요소가 있음. Micro Hybrid에 비해 모터, 교류발전기, 배터리 팩의 용량이 더 크고 자동차 구동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큼. 非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 연료 효율이 20 ~ 25%가량 증가함.
Full(strong) Hybrid	전기모터, 교류발전기, 배터리 팩 등의 전기적 부품의 구성은 Mild Hybrid와 동일하나 용량은 확대된 것임. 차이점은 Full Hybrid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용량의 내연기관을 채용하고 전기모터만으로 자동차를 구동할 수 있으며 연료효율 최적화를 위해 좀 더 복잡한 제어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임. 非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 연료 효율이 40 ~ 45%가량 증가함.
Plug-in Hybrid	본질적으로 Full Hybrid와 동일한 구성이지만 내연기관 규모는 더 줄이고 전기적 부품의 용량은 증가됨. 배터리 팩은 플러그를 통해 전력망으로부터 충전 가능. Plug-in Hybrid 자동차는 배터리 충전 후 엔진이 시동되기 전에도 전기모터만으로 60마일가량 주행 가능. 내연기관이 동작하는 동안 에너지 효율은 Full hybrid와 비슷한 편임. 주로 이동거리가 짧은 도심에서의 통근용에 적합하지만 장거리 여행도 가능.

하이브리드 기술은 현재 발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와 같은 구분이 시장에서 통일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이 다른 갈래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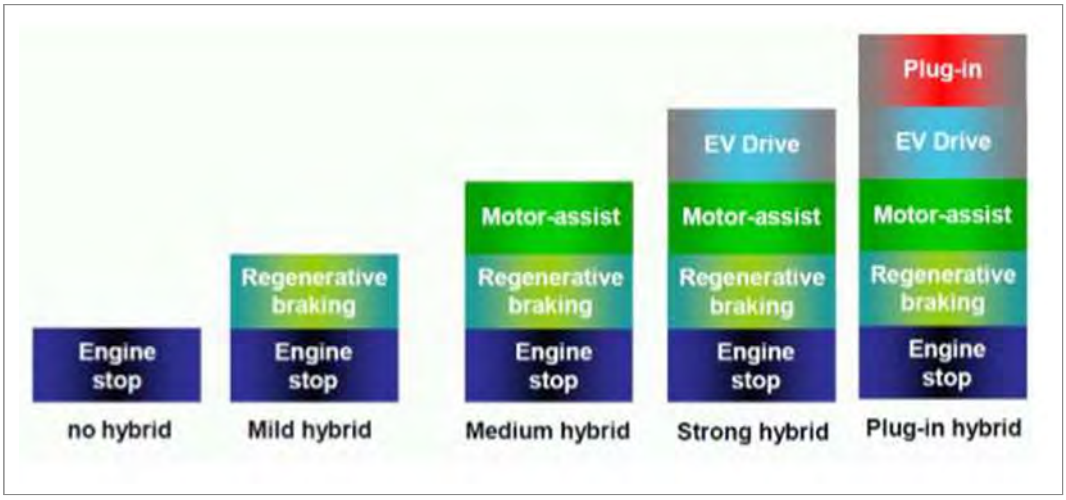

요약하자면 품목분류상 쟁점은 마이크로나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같이 자동차의 전반적인 운행이나 연료 효율 개선을 위한 전기부품(모터·스타터·교류발전기 등)을 장착하고 있으나 내연기관의 작동 없이 순수하게 전기모터만으로 차량이 주행할 수는 없고 전기모터가 내연기관에 보조적인 역할이나 지원만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자동차를 '추진용 모터로서의(as motors for propulsion)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봐 제8703.40 소호 내지 제8703.70 소호에 분류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풀 하이브리드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Mild Hybrid 자동차	Full Hybrid 자동차
전기모터의 역할	- 내연기관 엔진 보조 - 연료효율 개선	- 통상 저속모드에서 내연기관 개입 없이 전기모터로 주행 -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모터를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배터리 사이즈	- 상대적으로 작음 - 통상 12V 네트워크와 별도로 42V 배터리 팩 추가	- 상대적으로 큼 - 통상 12V 네트워크와 별도로 300V 배터리 팩 추가
연료 효율	非하이브리드 < Mild Hybrid < Full Hybrid	
주행모드	- EV 주행모드 없음	- EV 주행모드 있음

● Mild Hybrid & Full Hybrid 자동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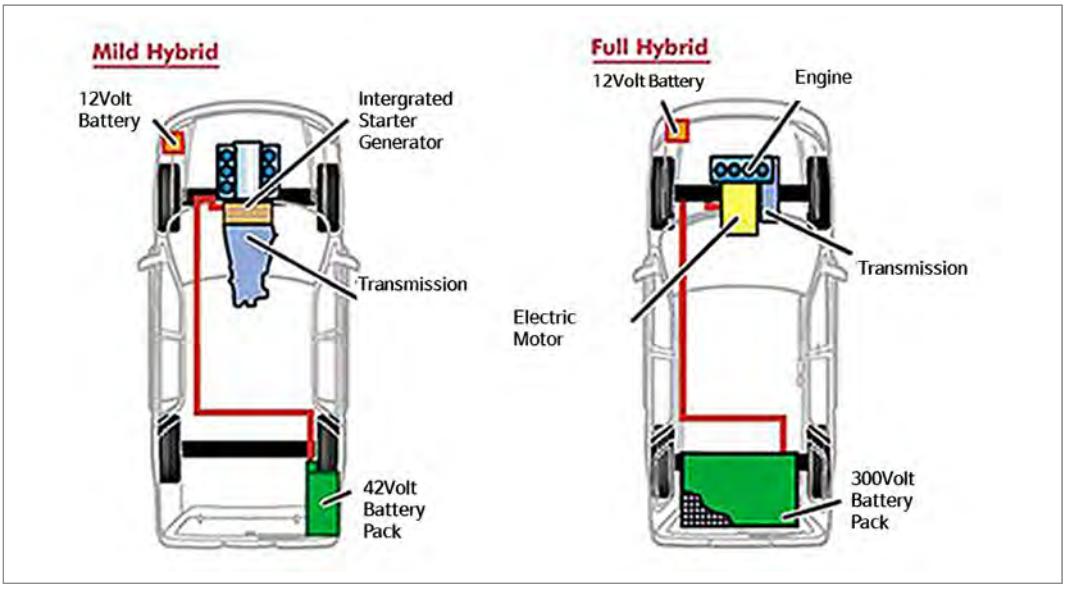

이후 2021년 4월, 제67차 WCO HS위원회는 특정 모델의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품목분류를 검토해 제8703.22 소호에 분류하도록 결정했다(통칙 제1호 및 제6호 적용).



Mild hybrid 자동차로 불리는 1.5리터 터보차지 4기통 가솔린 엔진 자동차[출력 135kW(184마력), 280 Nm]. 시동기/발전기가 장착된 EQ 부스트 시스템을 장착해 내연기관을 출력을 10kW(14마력), 160Nm 확대(48V 전력시스템 채택). 전기모터만으로 주행 불가능하며 플러그 이용한 충전도 불가능함.

이후 이 결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하이브리드 자동차 분류상의 모호함을 제거하기 위해 제8703호 해설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 그러나, 추진이 아닌 기능에만 사용되는 전력원(예 : 교류발전기/시동기)을 갖춘 자동차는 HEV로 분류할 수 없다. 이러한 동력원은 스탑-스타트 시스템(stop-start system)을 구동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회생 제동 및 충전 관리 시스템(regenerative braking and charge management system)을 갖추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기술(hybrid technology)' 또는 '마이크로 하이브리드(micro hybrid)'라고 부를 수 있지만, 추진용 전기모터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현 단계에서 관세율표나 FTA 협정세율표 등에서 제8703호 내의 소호에 따른 세율 차이나 수출입 요건 차이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의 분류와 관련한 품목분류 기준 이외의 쟁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럽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마이크로나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널리 사용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품목분류상의 실익도 많지 않다. 그러나 친환경, 고효율 자동차 기술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미래의 품목분류표 개정 가능성은 높은 편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분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성형목탄 분류 사례
- 2024년도 9월 품목분류 사전심사 -

김 홍 관 | 부산세관 분석실

1. 물품 소개



※ 해당 사진은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완연한 봄 날씨가 되면서 캠핑을 떠날 계획인 사람도 많을 것이다. 캠핑장에서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바비큐다.

숯불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고기와 고소한 냄새는 그 자체로 사람을 유혹한다. 그런데 이 구이의 맛을 좌우하는 숨은 주인공이 바로 '숯'이다. 숯불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복사열은 고기의 육즙 손실을 막고 내부까지 고르게 익히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까지 한다. 결국 숯의 종류와 특성이 고기 맛의 디테일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똑같은 고기도 어떤 숯을 쓰느냐에 따라 풍미는 전혀 달라진다. 식당마다 고기 맛의 차이를 만드는 요소이자 캠핑장에서의 바비큐 맛을 결정짓는 핵심이기도 하다.

숯은 크게 자연탄(목탄)과 성형탄으로 나뉜다. 자연탄 중 대표적인 백탄은 800 ~ 1,200℃의 고온 가마에서 산소를 차단해 탄화를 시작한 뒤 재를 덮어 식히기 때문에 표면이 흰색을 띤다. 대표적인 백탄에는 참숯과 비장탄이 있는데, 연기가 적게 나고 잡내가 덜 배기 때문에 직화구이에 최적이다. 단단한 성질 덕분에 부딪히면 금속성 소리가 나고,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리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점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격도 비싼 편이다.

반면 흑탄은 백탄보다 낮은 400 ~ 700℃에서 천천히 구운 뒤 입구와 연기 통로를 밀폐해 불을 끄고 가마 안에서 12주에 걸쳐 서서히 식혀 만든 숯으로, 불이 잘 붙고 화력이 순간적으로 강해 초벌용으로 많이 쓰인다. 향이 강해 고기에 스며들면서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내지만, 쉽게 부스러지고 연소시간이 짧은 단점도 있다. 숯의 종류에 따라 고기 맛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형탄은 목재를 분쇄해 다시 압축 성형한 숯으로, 가성비를 고려한 업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열탄, 점화가 쉬운 번개탄 형태의 착화탄, 일정한 온도 유지가 가능한 조개탄, 그리고 화력과 지속력이 좋은 대나무숯 등이 있다. 열탄은 저렴하고 단단해 연소 시간이 길지만 자연숯 향이 부족하고 연기와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이며, 착화탄은 연기가 많이 나 구이용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조개탄은 불이 잘 붙고 온도 유지에 유리하지만, 화력이 약하고 잘 부서진다. 대나무숯은 긴 연소시간과 높은 화력을 자랑하지만, 착화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단점이다. 최근 숯불구이 전문 식당에서는 백탄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비장탄은 연기와 냄새가 적고, 화력이 은은하게 지속돼 최고의 숯으로 꼽힌다.

이번 호에는 성형목탄의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한다.

2. 분류 사례

○ 개요

- 탄화된 야자 숯가루 약 70%, 바룹을 포함한 착화제 약 26%, 전분 약 4%를 혼합 후 원반 형상으로 성형하고 건조한 흑색계 목탄(크기 : 5㎝, 3㎝)

- 용도 : 구이용 숯

○ 결정 세번 및 분류 이유

- 결정 세번 : 제4402.90-1010호

- 분류 이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2024에 따르면 관세율표 제4402호에는 '목탄[쉘(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4402.90-1010호에는 '구이용의 성형목탄'을 세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목탄(wood charcoal)은 공기를 차단시켜 탄화시킴으로써 제조하며 이 호에는 블록(block) 모양·봉 모양·알갱이 모양·가루 모양의 것과 타르(tar)나 그 밖의 물질로 응결시켜 브리켓(briquette)·정제(tablet)·구(球) 모양과 같은 모양 등으로 만든 목탄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탄화된 야자 숯가루 약 70%, 바룸을 포함한 착화제 약 26%, 전분 약 4%를 혼합 후 원반 형상으로 성형하고 건조한 구이용 성형 목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02.90-1010호에 분류했다.

※ HSK 2025 적용 시 제4402.90-1010호가 아닌 제4402.90-1011호에 해당한다.

3. 품목분류 적용 길라잡이

부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코르크와 그 제품, 짚 … <후략>
류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호	(제4402호) 목탄[쉘(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HSK	(제4402.90호) 기타(대나무, 쉘이나 너트로 만든 것 제외) (제4402.90-1011호) 성형 목탄 - 착화제가 포함된 것

4.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4402.90-1010호 **※ HSK 2025 적용 시 제4402.90-1011호**
품명	Other agglomerated wood charcoal for roasting; PILLOW CHARCOAL BRIQUETTES; 착화제 유
물품 설명	- 탄화된 야자 숯가루 약 70%, 바룸을 포함한 착화제 약 26%, 전분 약 4%를 혼합 후 원반 형상으로 성형하고 건조한 흑색계 목탄(크기 : 5㎝, 3㎝) - 용도 : 구이용 숯 

섬유 플록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관세율표에서 제11부는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을 분류한다. 제54류와 제55류는 각각 인조필라멘트, 인조스테이플 섬유를 분류하도록 돼 있다.

필라멘트와 스테이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실을 만드는 섬유의 길이가 짧은 섬유를 '단섬유(스테이플 섬유)'라고 하고, 그 이상으로 무한하게 긴 섬유를 '장섬유(필라멘트 섬유)'라고 한다.

대표적인 단섬유로 면, 마, 울 등 천연섬유가 있다. 반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과 같은 인조섬유의 경우 대부분 장섬유다. 다만 인조섬유는 생산할 때 섬유의 길이를 인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장섬유와 단섬유가 모두 존재한다.

'스테이플사'는 단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모아 서로 꼬아 만든 실을 말한다. 짧은 섬유를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굵고 볼륨감이 있으며 털끝이 삐져나오는 현상으로 잔털감이 있어서 필라멘트사에 비해 비교적 감촉이 부드럽다.

'필라멘트사'는 장섬유를 여러 줄 겹쳐 꼬아 만든 실이다. 필라멘트사 한 가닥만으로 한 올의 실이 됐을 때 '모노 필라멘트사'라고 하고 몇 가닥의 필라멘트를 합해 한 올의 실을 형성할 때 '멀티 필라멘트사'라고 한다. 필라멘트사는 실의 굵기가 균일해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있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또한, 강도가 우수한 편이라 실에 강도를 줄 때 필라멘트사가 적합하다.

제56류는 워딩과 펠트를 분류하며 제5601호에는 '플록'을 분류하게 돼 있는데, '플록'은 나일론, 레이온, 폴리에스터 같은 섬유를 보통 1㎜ 이하로 아주 짧게 잘라서 만든 것이며,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한다.

손으로 만지면 부드러운 질감이 나는 카페트나 소파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플로킹 공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인데 '플로킹 공법'이란 정전기장에서의 흡인력을 이용해 '플록'을 미리 접착제를 칠한 바탕천에 흡착시키는 공정을 말한다. 정전기에 의해 섬유들이 수직으로 도포되기 때문에 벨벳처럼 부드럽고 고운 질감이 나는 표면을 만들 수 있다.

'플록'은 섬유가 짧다는 점에서 스테이플 섬유와 혼동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흑색의 섬유 조각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 섬유'에 해당하

는 제5504.10-9000호로 신고했다.

레이온 섬유로 확인됐으며 **섬유의 길이는 약 1㎜** 정도로 아주 짧게 절단된 형태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 시 발색하거나 무늬를 내는 용도로 사용한다.

먼저, 제55류 총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제55류 총설
인조스테이플 섬유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구멍으로 된(때로는 수천 개) 방사구(jet)를 통하여 방출될 때 제조되며 ; 수많은 방사구(jet)로부터 방출된 필라멘트는 토우(tow)의 모양으로 집속된다. 이 토우는 늘림 처리한 후에 **짧은 길이로 절단**하는데 이것은 방출 즉시 하거나 토우의 상태로 여러 공정(세척·표백·염색 등)을 거친 다음에 행한다. **절단한 섬유의 길이는 보통 25㎜부터 180㎜까지**이며 관련 특수인조섬유, **제조할 실의 종류와 혼합할 방직용 섬유의 성질에 따라 길이가 다르다.**

… <중략> …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제5601호의 **방직용 섬유의 플록(flock)(길이가 5㎜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제5601호를 살펴보자.

관세율표 제5601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되며, 특히 제5601.30-1000호에 '섬유의 플록(flock)'을 세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 (B)에서는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 이하의 것(플록)과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제5601호 해설서
(B)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 이하의 것(플록)과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
'방직용 섬유의 플록(textile flock)'은 길이가 **5㎜ 이하인 방직용 섬유(견·양모·면·인조섬유 등)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완전가공 공정에서 웨이스트(waste)로 얻어지며 특히 벨벳의 전모공정 중에서 얻어진다. 또한 **섬유의 토우(tow)나 섬유를 절단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는 섬유의 웨이스트로 얻어지거나 방직용 섬유를 갈아서 만든다. 방직용 섬유의 플록(flock)과 더스트(dust)는 표백·염색하거나 섬유를 인공적으로 컬(curled) 가공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물품들은 대단히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한다[예 : 다른 섬유와 섞어서 실로 방직하거나 벽지 도포(塗布)용이나 벽지 장식용의 모조 스웨이드(imitation suède) 제조용, 얼굴 화장분(face powder)이나 '메이크업(make-up)'의 기본 재료용].

인조 스테이플 섬유와 플록은 섬유 길이가 짧다는 점에서 혼동할 수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스테이플 섬유'의 경우 사(絲)를 만들기 위해 절단됐다면 '플록'의 경우는 다양한 용도(장식용,

메이크업용 등)로 사용하기 위해 절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길이가 짧은 섬유를 품목분류할 때는 섬유의 길이가 5㎜ 이하인지, 용도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card)·코움(comb)한 합성스테이플 섬유	방직용 섬유의 플록(textile flock)
	

따라서 본 품은 레이온 섬유의 플록(길이 5㎜ 이하)에 해당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1.30-1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VISCOSE RAYON STAPLE FIBRE	5504.10-9000 (P3 0%)	Textile flock	5601.30-1000 (A 8%)

'누에고치서 비단으로' 양잠은 곧 인류 역사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 관세사

양잠(養蚕)이란 누에(蚕)를 길러 그 누에고치에서 생사를 추출해 비단을 만드는 것이고, 양잠업이란 그 관련 산업을 말한다. 발상지는 중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4,600여 년 전 중국의 고서 '잠경(蠶經)'에 황제 헌원씨의 원비 서능씨가 누에를 길러 옷을 지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4,300여 년 전 누에를 길렀다는 기록이 존재하는데, 삼한시대 이전에 중국에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양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호황을 맞았던 국내 양잠 산업은 대체 섬유 개발과 수입 증가로 수요가 줄면서 차차 쇠락기에 접어들었다. 인류와 함께해 온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우리 곁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하지만 양잠이 점점 사라져 가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양잠의 가치를 전승하고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충청북도 보은군에서는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미래 무형문화 유산 발굴 육성 사업의 하나로 양잠 산업 전승을 위한 방과 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 과정에는 양잠 농민이 직접 참여해 이론만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포함됐다.

관세율표에서 양잠의 출발점이 되는 잠종은 제0511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분류된다. 제0511호 해설서 '(7) 잠종'에서는 "이들은 담황색으로부터 점차로 회색이나 황토색으로 변하는 작은 열매의 모양을 지니며 … <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누에의 집이라 할 수 있는 '누에고치'는 관세율표 제5001호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된다. 역시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제5002호에 분류하는 생사를 뽑을 수 있는 누에고치만을 분류하며 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5003호)"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생사는 관세율표 제5002호에, 견직물은 제5007호에 각기 분류된다.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28호_2025.4.28.

최신개정법령

부령

-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고시

-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입법예고

-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본 내용은 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령

■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1125호, 2025.4.25.)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47호, 2019. 8. 23.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22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20.0000호 또는 제3921.9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공급국	공급자	모델명	두께(㎛)
인도네시아	인도폴리(PT Indopoly Swakarsa Industry Tbk.)	DHR	18
		SHO	23, 25
		SHR	18, 20, 25
		SHRV	25
		DHSH	18
	아르가(PT Argha Karya Prima Industry Tbk.)	PSP	20
		PXAS	23
		PXA	20, 23, 33
	트리아스(PT Trias Sentosa Tbk.)	HSS	18, 19.5
		THSS	18
		THSSO	18
		THSWO	18
		HSB	17.6

[별표 2]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슈캉(Jiangsu Shukang Packing Material Co., Ltd.) 나. 헝창(Jiangsu Hengchuang Packing Material Co., Ltd.) 다. 상량테크(Jiangsu Shuangliang Technology Co., Ltd.) 라. 상량그룹(Jiangsu Shuangliang GroupCo., Ltd.) 마. 홍다트레이딩(Jiangyin Hongda Trading Co., Ltd.) 바. 상량브랜치(Jiangsu Shuangliang Group Co., Ltd. Sales Branch	3.30
	2.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데크로패키지(Guangdong Decro Package Films Co., Ltd.) 나. 데크로필름(Guangdong Decro Film New Materials Co., Ltd.) 다. 데크로홍콩[Decro New Material(H.K.)Co., Ltd.] 라. 데크로이운(Guangdong Shunde Decro Yiyun Technology Ltd. LiabilityCompany)	2.50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3. 궈펑(Anhui Guofeng New Materials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수출하는 자	5.19
	4. 종산(Zhongshan New Asia Adhesive Products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04
	5.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킨리드(Zhejiang Kinlead Innovative Materials Co., Ltd.) 나. 킨윈(Kinwin Plastic Industrial Co., Ltd.) 다. 울트라패스트(Ultra Fast Development Limited)	25.04
	6.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수저우쿤린(Suzhou Kunlene Film Industries Co., Ltd.) 나. 운난쿤린(Yunnan Kunlene Film Industries Co., Ltd.)	25.04
	7. 그 밖의 공급자	7.40
인도네시아	8. 인도폴리(PT Indopoly Swakarsa Industry Tbk.)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19
	9. 아르가(PT Argha Karya Prima Industry Tbk.)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2
	10. 트리아스(PT Trias Sentosa Tbk.)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03
	11. 롯데패키징(PT Lotte Packaging)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0.00
	12. 그 밖의 공급자	5.98
태국	13. 에이제이피(A.J. Plast Public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49
	14. 타이필름(Thai Film Industries Public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0.55
	15. 그 밖의 공급자	10.55

비고 : 제7호·제12호 또는 제15호의 공급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급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급자 또는 제13호·제14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7호·제12호 또는 제15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고시

■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15호, 2025. 4. 24.)

2024년 10월 4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 이상인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Hot-rolled carbon or other alloy steel plate)

ㅇ 관세품목분류 : 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1)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2) 냉간 압연을 한 것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바오스틸(Baoshan Iron &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91
	2. 장수사강(Jiangsu Shagang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62
	3. 샹탄스틸(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 Ltd.)과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02
	4. 사이노 인터내셔널(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02
	5. 샤먼 아이티지(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02
	6. 그 밖의 공급자	31.69

라. 부과기간 : 2025. 4. 24. ~ 2025. 8. 23.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관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3월 4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고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 보고서
2.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입법예고

■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5호, 2021.9.15.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14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 물품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2.1090호, 제7219.12.900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3.1090호, 제7219.13.9000호, 제7219.14.1010호, 제7219.14.1090호, 제7219.14.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3.1090호, 제7219.23.9000호, 제7219.24.1010호, 제7219.24.1090호, 제7219.24.9000호, 제7219.31.1010호, 제7219.31.1090호, 제7219.31.900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2.1090호, 제7219.32.900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3.1090호, 제7219.33.900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4.1090호, 제7219.34.9000호, 제7219.35.1010호, 제7219.35.1090호, 제7219.35.9000호, 제7219.90.1010호, 제7219.90.1090호, 제7219.90.900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1.1090호, 제7220.11.9000호, 제7220.12.1010호, 제7220.12.1090호, 제7220.12.9000호, 제7220.20.1010호, 제7220.20.1090호, 제7220.20.9000호, 제7220.90.1010호, 제7220.90.1090호, 제7220.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 8밀리미터(mm) 이하인 것으로 하며,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함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1.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S31803, S32050, S32205, S32750, N08367 강종의 제품
2.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의 포함 여부는 상관없다)고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며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200계 제품(「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4.101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4.1010호, 제7219.31.101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5.1010호, 제7219.90.101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2.1010호, 제7220.20.1010호 또는 제7220.90.101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폭이 2,000밀리미터(mm)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4. 316 또는 316L 강종으로 두께가 3.0밀리미터(mm) 이상 4.0밀리미터(mm) 이하면서 폭 1,524밀리미터(mm)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5. 중국국가표준(GB) 2Cr13, 3Cr13, 4Cr13, 6Cr13 강종으로 두께 3밀리미터(mm) 이하면서 폭 400밀리미터(mm) 이하인 경도 HV 250 이상 350 이하의 제품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가. 탄소(C)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5% 이하일 것
   나. 규소(Si)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 이상 0.6% 이하일 것
   다. 망간(Mn)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9% 이상 1.3% 이하일 것
   라. 인(P)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3% 이하일 것
   마. 황(S)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05% 이하일 것
   바. 니켈(Ni)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상 11.5% 이하일 것
   사. 크로뮴(Cr)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8.0% 이상 19.5% 이하일 것
   아. 몰리브덴(Mo)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 이하일 것
   자. 구리(Cu)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 이하일 것
   차. 질소(N)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5% 이하일 것
   카. 두께가 0.34밀리미터(mm) 이상 0.36밀리미터(mm) 이하일 것
7. 두께 0.2㎜의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전체 중량에서 탄소(C) 0.15%이하, 크롬(Cr) 16~18%, 망간(Mn) 2% 이하, 질소(N) 0.1% 이하, 니켈(Ni) 6~8%, 인(P) 0.045% 이하, 황(S) 0.03% 이하, 규소(Si) 1%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양면에 0.05㎜의 니트릴 부타디엔 고무(Nitrile Butadiene Rubber)가 코팅된 제품

나. 부과대상 공급자는 부과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로 하되,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다음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함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

공급국	공급자
중국	1.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과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티스코홍콩[TISCO Stainless Steel (H.K.) Limited] 나. 티스코트레이딩[TISCO Trading (H.K.) LTD.] 다. 타이강보세(Shanxi Taigang Bonded & Comprehensive Service Co., LTD.)
	2.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
인도네시아	3.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과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광칭(PT. INDONESIA GUANG CHING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 나. 루이푸(PT. INDO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 다. 이터널청산(ETERNAL TSINGSHAN GROUP LIMITED) 라. 골든하버(GOLDEN HARBOUR INTERNATIONAL PTE. LTD.)
대만	4.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와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이예마우(Yieh Mau Corp.) 나. 탕엉(Tang Eng Iron Works Co., Ltd.) 다. 와이씨엘(Yieh Corporation Limited)
	5.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9.07%~25.82%로 함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톈진타이강(Tianjin Taigang & TPCO Stainless Steel Co., Ltd.) 나. 산시정밀(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Precision Strip Co., Ltd.)	23.69
	2.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82
	3. 그 밖의 공급자	24.83
인도네시아	4.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광칭(PT. INDONESIA GUANG CHING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 나. 루이푸(PT. INDO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	25.82
	5. 그 밖의 공급자	25.82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대만	6.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와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이예마우(Yieh Mau Corp.) 나. 탕엉(Tang Eng Iron Works Co., Ltd.)	9.47
	7.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17
	8. 그 밖의 공급자	9.07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3호·제5호 또는 제8호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라. 적용기간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 : s9802102@korea.kr, FAX :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025년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 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① 논문 원고
② 논문투고 신청서
③ 연구 윤리 확인서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문 의 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 서비스

60여년 축적한 관세·무역 전문 도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하세요!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https://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